

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



[시행 2023. 6. 11.] [조례 제5030호, 2023. 6. 9., 일부개정]

강원특별자치도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10.14.><개정 2023. 6. 9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강원특별자치도민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개정 2023. 6. 9.>
 - 가.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(이하 "강원특별자치도민"이라 한다)<개정 2023. 6. 9.>
 - 나. 강원특별자치도와 관할 시·군의 공기업, 출자·출연기관 등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(이하 "관계 기관 종사자"라 한다)<개정 2023. 6. 9.>
2. "교육훈련"이란 공익신장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.
3. "이러닝"이란 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습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계획 수립 등) ①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은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(이하 "운영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<개정 2022.10.14.><개정 2023. 6. 9.>

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추진 목표<개정 2023. 6. 9.>
 2.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계획<개정 2023. 6. 9.>
 3.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도 조사<개정 2023. 6. 9.>
 4.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연간 일정<개정 2023. 6. 9.>
 5.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개정 2023. 6. 9.>
- ③ 원장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4조(교육훈련대상자) 강원특별자치도민등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다.<개정 2023. 6. 9.>

제5조(교육훈련의 내용) ①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.<개정 2023. 6. 9.>

1. 국·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
2.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

3.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
 4. 취약계층의 취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교육
 5. 그 밖에 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<개정 2023. 6. 9.>
- ② 원장은 관계 기관 종사자에게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훈련의 실시)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집합교육
 2. 현장교육
 3. 이러닝
- ② 그 밖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교육훈련의 수료) ① 이 조례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(이하 "교육생"이라 한다)이 교육훈련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에 참여한 경우에 수료한 것으로 본다.

-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(이하 "수료생"이라 한다)에게 교육훈련 수료증을 수여한다. 다만 원장이 수료생에게 교육훈련 이수 내역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수료증을 수여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의견수렴 등) ① 원장은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을 종료한 후에 교육훈련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- ② 원장은 교육훈련의 개선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육훈련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훈련비 등의 지원) ①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등 중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<개정 2023. 6. 9.>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1.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
 2. 현장 견학비
 3. 취약계층 교육훈련을 위한 숙식비
 4.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부 칙 <제4895호, 2022.5.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4933호(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), 2022.10.14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까지 생략

㉞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"를 "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인재개발원"을 "공무원교육원"으로 한다.

제3조 중 "인재개발원의 장"을 "공무원교육원의 장"으로 한다.

㉟ 에서㊱

부칙 <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, 2023. 6. 9.>

null